

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정윤숙 의원의 7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5년 12월 8 일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12월 9 일

3. 제안 이유

-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한 “실무협의회”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,
- 노사정협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성실히 이행 의무를 보장하는 등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제명 등은 「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」에 맞도록 정비하고,
- 지역 노동현안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, 충청북도 노사정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무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함.(안 제7조)
- 관계기관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며,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설명이나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9조)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노동현안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노사정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는

- 실무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것과
- 성실이행의무 조항의 근거를 더욱 세분화하여 협의회의 의결 사항에 대한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, 최근의 지역 노동현안이 날로 첨예화되고 복잡 다변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므로, 이러한 사안들을 협의하는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의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례안 개정으로 판단됩니다.

다만, 이 조례는 의원 입법 발의로 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 할 때 조례 개정 후 집행부에서 시행할 때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의 의견청취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